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18년 11월호

Contents

회계정보

- KIFRS 신(新)수익기준서 적용 영향 분석 및 유의사항

세무 및 법률정보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 최신 세우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 /관리회계 /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 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 8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 의 한국 Member Firm 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KIFRS 신(新)수익기준서 적용 영향 분석 및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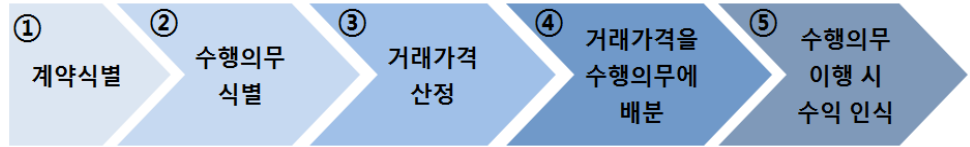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8.11. 6]

KIFRS
신(新)수익기준서
적용 영향 분석 및
유의사항

분석개요

1. 분석개요

- 2018 년부터 고객과의 모든 수익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K-IFRS 제 1115 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이하 新수익기준서)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건설 등 7 개 업종*(49 개사)을 선별하여 2018 년 반기보고서 등을 토대로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新수익기준서의
주요 내용

2. 新수익기준서의 주요 내용

- 고객과의 모든 유형의 계약에 적용되는 5 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제시하여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과 수익인식의 일관성 제고
 - 舊수익기준서는 기본적으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하는 반면, 新수익기준서는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통제할 때 인식
 - 특히, 舊수익기준서는 하나의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구성요소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반면, 新수익기준서는 구별되는 수행의무 식별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제시
- 新수익기준서는 거래대가에 할인, 리베이트 등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변동대가), 고객으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하여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
- 반품권이 있는 판매의 경우 종전에는 구체적 지침이 없었던 반면, 新수익기준서에서는 반품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및 그 원가를 환불부채 및 자산(반환제품회수권)으로 각각 총액 표시하도록 규정

주요 업종별
영향분석

3. 주요 업종별 영향분석

가. 종합분석

新수익기준서 적용에 따라 분석 기업(49 개사)중 45 개사(91.8%)는 매출 또는 자산·부채가 변동되는 등 재무적 영향을 받았으나 2018 년 상반기 회계변경의 금액적 효과는 전반적으로 크지 않음

반기실적만으로 회계기준 변경효과를 단정하기는 한계가 있고 분석대상 이외의 산업 및 기업에서도 중요한 재무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손익 영향) 新수익기준서가 적용된 '18 년 상반기 매출은 舊수익기준서 적용시보다 다소 감소(△0.87%)

◦ 유통업의 매출은 일부 기업이 총액 매출을 순액으로 변경한 효과 등으로 3.94% 감소하고, 통신(△1.53%)등 여타 업종도 대부분 감소하였으나 여행업(11.04%)은 항공권 매출 회계처리의 총액 인식 등으로 증가

◦ 매출은 감소하였지만, 조선업의 공사손실충당부채 감소와 건설업 중 일부기업의 인도기준에 따른 수익인식시점이 '18 년 상반기 중 도래한 효과 등으로 2018 년 상반기 순이익은 다소 증가(0.18%)

2018년 상반기 매출 및 순이익 변동 현황				
(단위: 억원, %)				
업종	매출 ^{주1)}		순이익 ^{주1)}	
	변동금액	변동비율	변동금액	변동비율
건설	4,394	0.89	1,084	3.46
조선	△49	△0.03	317	23.24
통신	△4,002	△1.53	△1,001	△4.06
자동차	△1,927	△0.25	△329	△1.43
제약	△53	△0.16	44	2.81
유통 ^{주2)}	△17,877	△3.94	31	0.45
여행 ^{주2)}	785	11.04	11	1.25
합계	△18,729	△0.87	157	0.18

주 1) 변동금액: 新 기준- 舊 기준, 변동비율: (新 기준- 舊 기준)/ 舊 기준 (이하 동일)

주 2) 완전소급법 적용기업의 손익계산서 영향은 '17년 상반기 효과를 기재

(자본 영향) 2018.6월말 자산과 자본은 종전 기준보다 0.73%와 1.05% 증가

◦ 이는 주로 통신업에서 회수가 가능한 고객모집수수료(계약체결 증분원가)의 회계처리 변경(일시 비용→자산인식 후 상각)등으로 자산과 자본이 증가(각각 7.42%, 10.88%)한 반면,

건설업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수주활동 관련 지출의 비용처리 등으로 자산과 자본이 감소(각각 △1.55%, △2.72%)한데 기인

◦ 한편, '18.6월말 부채도 종전 기준보다 0.47% 증가한 바, 주로 통신업(3.83%), 여행업(2.75%), 제약업(1.33%) 등에서 증가

2018.6 월말 자산, 부채 및 자본 변동 현황

(단위: 억원, %)

업종	자산		부채		자본	
	변동금액	변동비율	변동금액	변동비율	변동금액	변동비율
건설	△18,929	△1.55	△5,155	△0.72	△13,774	△2.72
조선	3,081	0.44	2,748	0.64	333	0.12
통신	54,950	7.42	13,900	3.83	41,050	10.88
자동차	925	0.04	1,314	0.10	△389	△0.04
제약	156	0.19	441	1.33	△285	△0.56
유통 ^{주1)}	1,075	0.18	1,528	0.47	△453	△0.16
여행 ^{주1)}	340	1.92	297	2.75	43	0.62
합계	41,598	0.73	15,073	0.47	26,525	1.05

주 1) : 완전소급법 적용기업의 재무상태표 영향은 '17.12.31. 효과를 기재

나. 업종별 세부 내역

업종	7개 업종별 주요 변경 내용('18.6 월말 기준)
건설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수주비용 등 계약체결 증분원가의 비용처리 등에 따라 자기자본은 감소(△2.72%)한 반면, - 일부 자체분양계약의 경우 수익인식시점이 변경(진행기준→인도기준)되면서 '18년 상반기 중 인도기준에 따른 수익인식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각각 0.89%, 3.46%)
조선	진행기준 인식요건 변경에 따라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0.03%) - 일부기업의 선박 중개수수료의 자산인식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감소 등에 따라 '18년 반기 순손실이 감소(23.24%)
통신	무선통신서비스계약의 총 거래가격을 두 개의 수행의무(휴대폰 판매, 통신서비스)에 배분하면서 매출은 다소 감소(△1.53%)한 반면, -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 모집 수수료 등 계약체결 증분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한 후 상각하면서 자기자본은 개선(10.88%)
자동차	차량판매계약에서 차량 및 상품의 판매, 용역유형 보증(차량 보증 용역), 부가서비스의 수행의무를 식별한 후, '18년 상반기 중 미이행된 수행의무에 대한 매출이 이연되면서 '18년 반기 매출 및 순이익 감소(각각 △0.25%, △1.43%)

업종	7개 업종별 주요 변경 내용('18.6월말 기준)_계속
제약	반품 회계처리(총액 인식) 적용 등으로 대부분 기업의 자산·부채가 다소 증가하였고, 변동대가의 추정으로 매출은 일부 감소(△0.16%)
유통	반품 회계처리(총액 인식) 적용 등으로 자산·부채가 증가하였고, 총액으로 인식했던 매출 중 일부를 순액인식으로 변경하고, 판매장려금 등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를 수익에서 차감하여 매출이 감소(△3.94%)
여행	항공권 등을 대량 선매입후 고객에게 판매하는 매출을 순액에서 총액인식으로 변경하면서 관련 매출이 11.04% 증가

회계기준 변경효과
공시에 대한
점검결과

4. 회계기준 변경효과 공시에 대한 점검결과

(공시방법) 新수익기준서의 적용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완전 소급법')하고 비교 공시해야 하나

◦ 재무제표를 소급 작성하는데 따른 실무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新수익기준서는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고, 2018.1.1.시점에 기준변경 효과를 일시 반영하는 방법을 허용('누적효과 일괄조정법')

구분	2017	2018
완전소급법	<p style="text-align: center;">신 기준서 (K-IFRS 제1115호)</p> <p style="text-align: center;">* 누적효과는 '17.1.1.에 반영</p>	<p style="text-align: center;">신 기준서 (K-IFRS 제1115호)</p>
누적효과 일괄조정법	<p style="text-align: center;">구 기준서</p>	<p style="text-align: center;">신 기준서 (K-IFRS 제1115호)</p> <p style="text-align: center;">* 누적효과는 '18.1.1.에 반영</p>

◦ 3개사*는 완전 소급법을 적용한 반면, 42개사는 실무적 편의를 위해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을 선택

* 여행업 2개사 및 유통업 1개사

이에 따라 대부분 기업이 2018년 반기 재무제표는 新수익기준서를, 2017년 재무제표는 舊수익기준서를 적용하여 당기와 전기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음

(재무영향 공시) 회계기준 변경효과의 주석공시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일부 기업의 경우 주석 공시가 불충분한 것으로 파악

- 新수익기준서 도입 첫해인 금년도에는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계정과목별로 회계기준 변경 전·후 금액과 조정 사유 등 회계기준 변경 효과를 주석으로 충실히 기재할 필요

불충분한 공시 사례	개선안
(1)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효과를 서술식으로만 기재하여, 新기준 적용 효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곤란 (예) 매출액 xxx 백만원 감소, 이익잉여금 xxx 백만원 감소 등	재무제표의 각 계정과목별로 회계기준 변경전금액, 변경후금액, 조정금액을 표로 제시하여 공시할 필요 (작성예시 참조)
(2) 각 계정과목별 수준이 아닌,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등에 미치는 영향만을 공시하여, 회계기준 변경이 각 계정과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곤란	재무상태표 뿐만 아니라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의 각 계정과목 수준에서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금액적 영향을 공시할 필요
(3)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을 적용하는 기업이 각 계정과목의 조정금액에 대한 유의적인 변동이 생긴 이유를 미기재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을 적용하는 기업은재무제표 이용자가 회계기준 변경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각 계정과목별로 조정금액에 대한 유의적인 변동이 생긴 이유를 상세히 기재할 필요
(4)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을 적용하는 기업이 '18.1.1 변경효과만 기재하고, 해당 보고기간의 변경효과를 미기재	누적효과 일괄조정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18.1.1 변경효과만이 아니라 해당 보고기간*의 변경효과도 기재할 필요 * (예) '18년 연차보고서의 경우, 재무상태표: '18.12.31., 손익계산서: '18.1.1.~'18.12.31.

(작성예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1.1.~2018.12.31.(당기)		
	기업회계 기준서제 1115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조정금액	공시금액
매출(*1)	xxx	xxx	xxx
...			

(*1) [매출 계정 금액이 유의적으로 변동된 사유를 상세히 기재]

재무제표 이용 시 유의사항 5. 재무제표 이용 시 유의사항

□ 新수익기준서는 매출을 포함한 재무제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18년도 재무제표 작성 및 이용시 세심한 주의 필요

◦ (기업) 경영진은 新수익기준서 관점에서 고객과의 계약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새로운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작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

회계 기준 변경 효과가 있을 경우 주석에 각 계정과목별로 회계기준 변경 전·후 금액, 조정사유 등을 충실히 공시할 필요

◦ (감사인) 감사인은 기업이 새로운 수익기준서를 간과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기존 관행대로 회계처리 하였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재무제표 본문뿐만 아니라 주석에 회계기준 변경효과를 충실히 기재하였는지 중점적으로 감사할 필요

◦ (투자자) 新수익기준서 도입에 따라 일부 기업은 매출 또는 자기자본 등에 많은 영향을 받은 사례도 있어

주석을 통해, '18년 경영성과에 영업실적의 변동이 아닌 새로운 수익기준서의 적용 효과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

(시사점) 금융감독원은 新수익기준서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회계기준 적용 관련 이슈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원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수익인식 정착지원 TF 및 질의회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新수익기준서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며, 재무제표 작성·이용시 유의사항을 설명회 등을 통해 전파할 계획입니다.

新수익기준서 적용 주요사례(참고) 6. 新수익기준서 적용 주요사례 (참고)

- 수행의무 식별

■ A 자동차사는 고객과 ① 차량 판매, ② 차량 보증 용역(용역유형 보증), ③ 차량 운송 용역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는 계약을 체결

→ 舊수익기준서에서는 하나의 계약 내에 여러 가지 유형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하는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新수익기준서에서는 ①~③ 유형이 각각 구별된다면 각각의 거래로 보아 수행의무를 이행한 시점(차량의 인도, 보증 용역의 이행 및 운송 용역의 이행 시점)에 수익 인식

[舊 수익기준서]



[新 수익기준서]



- 고객모집수수료의 자산 처리 사례

- D 통신사의 '18 년 반기보고서 주석을 살펴보면, 新수익기준서를 적용함에 따라 종전 보다 '18 년 기초 및 6 월말 자기자본이 각각 1 조 3,034 억원, 1 조 2,328 억원 증가

(단위: 억 원, %)

구분	舊수익기준서(A)	新수익기준서(B)	변동	
			금액(C=B-A)	비율(D=C/A)
'18 년 기초 자기자본	52,330	65,364	13,034	24.9
'18 년 6 월말 자기자본	53,819	66,147	12,328	22.9

이러한 자기자본 증가는 주로 통신서비스 등 서비스 고객 모집 실적에 따라 지급한 고객모집수수료(계약체결 증분원가)의 회계변경* 등에 기인

* 고객모집수수료를 종전에는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新수익기준서에서는 회수가 가능한 고객모집수수료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예상 계약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비용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

K-IFRS 제 1115 호
新수익기준서의
주요 내용(요약)

7. K-IFRS 제 1115 호 新수익기준서의 주요 내용(요약)

□ 5 단계 수익인식모형

- ① (1 단계: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만 적용**

<적용사례>

- (통신) 무선통신서비스 계약에서 두 개의 수행의무(휴대폰 판매, 통신서비스) 식별
- (자동차) 차량판매 계약에서 차량 및 상품의 판매, 용역유형 보증(차량 보증 용역), 차량 운송 용역, 부가서비스 등을 수행의무로 식별

- ② (2 단계: 수행의무를 식별) **하나의 계약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여러 약속을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재화나 용역들이 구별된다면 동 약속은 수행의무이고 별도로 회계처리**

- ③ (3 단계: 거래가격을 산정) **거래가격은 고객으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로, 변동하는 경우 그 금액을 추정하되 수익의 과대계상을 막기 위해 변동대가의 추정치를 제약**

<적용사례>

- (계약, 유통) 반품 회계처리(총액 인식) 적용으로 관련 자산·부채 동액 증가
- (계약, 유통) 판매장려금 등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를 수익에서 차감함에 따라 매출 감소

- ④ (4 단계: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거래가격은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 기준으로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

— <적용사례> —

- (통신, 자동차) 총 거래가격을 2 단계에서 식별된 수행의무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 기준으로 배분

- ⑤ (5 단계: 수행의무의 이행 시 수익인식)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통제의 이전) 수익인식**

□ **기타 사항**

- **계약원가의 자산 인식 규정, 본인 對 대리인 고려사항** 등을 상세히 제시

— <적용사례> —

① **계약원가**

- (건설)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수주비용 등 계약체결 증분원가의 비용처리
- (통신,조선)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모집수수료, 선박건조계약 중개수수료 등 계약체결 증분원가를 자산으로 인식 후 상각

② **본인 對 대리인**

- (유통) 일부기업이 총액으로 인식했던 매출 중 일부를 순액인식으로 변경
- (여행) 항공권 등 대량 선매입 후 고객에게 판매하는 매출을 총액인식으로 변경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 국세청은 지난 2018. 11. 6 일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2017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세정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 세정지원 대상

- '17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 (법인 및 개인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법인,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 전문인 적용역제공 법인 및 개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17사업연도('17년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 (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 '19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8년 대비2% - 4% (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법인 및 개인)

*상시근로자수=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해당연도의 개월 수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비율>

'17과세연도 수입금액	3백억 미만	3백억 이상~1천억 미만
일자리 창출 비율	2% 이상	4% 이상

2. 세정지원 내용

- 2017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

3.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제출방법

- (인터넷접수)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의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송

- *홈택스 로그인(사업자ID 또는 공인인증서)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서면접수) 우편접수,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 제출기한 : 2018. 11. 30.(금)

- 원고가 1999. 12. 3.경 주주인 XX공제회로부터 이자율 연 13.06%로 금전을 차입한 이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각 이자를 지급할 당시의 이 사건 차입 이자율은, 그 시가인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16두39573, 2018.10.25)
-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 한편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하나인 ‘금전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서 정한 이자율을 그 시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0375 판결 참조).
- 이 사건 차입과 같이 차용금의 변제기가 장기간인 경우에는 높은 이율을 유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금전을 차용한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이자를 지급할 당시를 기준으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 사건 차입의 약정기간 동안 시중금리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 대체로 하락하고 있었다. 과세연도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시중금리는 가장 높은 이율이 연 5.81%에 불과하고 계속하여 시중금리가 하락추세였으며, 당좌대출이자율은 일반 시중금리보다 높게 고시되거나 정하여졌으므로 이 사건 차입의 약정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차입 이자율의 시가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당좌대출 이자율 연 8.5%, 2012년 당좌대출이자율 연 6.9%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이 사건 차입 약정에 차주가 대출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원고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조항으로 보일 뿐,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높은 이율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낮은 이율의 채무부담행위까지 금지하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차입 약정에 원고의 조기 상환을 금지하는 어떠한 제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시중금리가 장기간 낮게 형성되었을 때 원고가 다른 금융업자로부터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받아 조기 상환을 하거나 이를 근거로 XX 공제회를 상대로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이지 않는다.

- 원고 등이 이 사건 협의회에 이 사건 주식의 처분권을 위임하고 경영권포기 각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회사가 채권금융기관들의 공동관리에 들어간 점 및 이 사건 회사의 워크아웃 절차 진행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18두44753, 2018.10.04)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주주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명목이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3.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한 만큼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이 사건 협의회에서 가결한 워크아웃 절차에 따라 기존 주주의 보유주식을 5:1 비율로 무상감자하기 위한 것이었다. 원고 등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직후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에 보유주식 전부에 대한 처분권을 일임함과 동시에 이 사건 협의회와 경영권포기, 주식포기 및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위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특별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협의회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상시 관리·감독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정상이자율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3, 2018.10.22)

 -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따른 정상이자율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업 무 소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문의처	<p>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p> <p>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p>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